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67호
2019. 10. 16.(수)

차 례

고 시(1)

- 도시관리계획(범셋골어린이공원 조성)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제2019-120호)1

공 고(1)

-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공람공고 (공고 제2019-875호)5

입법예고(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879호)9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882호)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883호)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공고 제2019-885호)42

공 람									
--------	--	--	--	--	--	--	--	--	--

도시관리계획(범셋골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1동 286번지(범셋골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노후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공원이용자 안전 및 편익을 증진시켜 주민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범셋골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범셋골어린이공원 조성)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범셋골어린이공원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	-	범셋골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법1동 286번지	1,580.1	건설교통부 고시 제315호(1984.8.20.)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범셋골 어린이공원	○ 시설면적 : 증) 127.6㎡ ○ 녹지면적 : 감) 127.6㎡	○ 공원 이용패턴 및 이용률 고려, 협소한 광장 확장 및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 도입

3.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사

구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580.1	1,580.1	-	-	15.9	증 15.9	-	15.9	증 15.9	
시 설	711.5	839.1	증 127.6	-	15.9	증 15.9	-	15.9	증 15.9	
녹 지	868.6	741.0	감 127.6	-	-	-	-	-	-	

4.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조사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580.1	1,580.1	-	100.0	-	15.9	증 15.9	-	15.9	증 15.9		
계	711.5	839.1	증 127.6	53.10	-	15.9	증 15.9	-	15.9	증 15.9		
기 반 시 설	소계	464.0	361.6	감 102.4	22.88	-	-	-	-	-	-	
	도로	306.7	123.4	감 183.3	7.81	-	-	-	-	-	-	
	광장	157.3	238.2	증 80.9	15.07	-	-	-	-	-	-	
휴양시설	37.7	214.4	증 176.7	13.57	-	-	-	-	-	-		
유희시설	209.8	220.6	증 10.8	13.96	-	-	-	-	-	-		
운동시설	-	26.6	증 26.6	1.68	-	-	-	-	-	-		
편익시설	-	15.9	증 15.9	1.01	-	15.9	증 15.9	-	15.9	증 15.9		
관리시설	-	-	-	-	-	-	-	-	-	-		
녹 지	868.6	741.0	감 127.6	46.90	-	-	-	-	-	-		

5.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조사

구분	번호	시설내용	부지면적(㎡)			시설(개소)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580.1	1,580.1	-	25	27	-	15.9	증 15.9	-	15.9	증 15.9	
시설소계			711.5	839.1	증 127.6	25	27	-	15.9	증 15.9	-	15.9	증 15.9	
도로 및 광장		소계	464.0	361.6	감 102.4	-	-	-	-	-	-	-	-	
		도로	306.7	123.4	감 183.3	-	-	-	-	-	-	-	-	
	1-1	중앙광장	157.3	170.3	증 13.0	-	-	-	-	-	-	-	-	
	1-2	진입광장	-	67.9	증 67.9	-	-	-	-	-	-	-	-	
휴양 시설		소계	37.7	214.4	증 176.7	16	14	-	-	-	-	-	-	
	2-1	휴게쉼터-1	37.7	33.0	감 4.7	1	1	-	-	-	-	-	-	
	2-2	휴게쉼터-2	-	181.4	증 181.4	-	1	-	-	-	-	-	-	
	2-3	파고라	-	-	-	1	1	-	-	-	-	-	-	
	2-4	등의자	-	-	-	10	8	-	-	-	-	-	-	
	2-5	평의자	-	-	-	4	2	-	-	-	-	-	-	
	2-6	흔들의자	-	-	-	-	1	-	-	-	-	-	-	
유희 시설		소계	209.8	220.6	증 10.8	2	5	-	-	-	-	-	-	
	3-1	놀이공간	209.8	220.6	증 10.8	1	1	-	-	-	-	-	-	
	3-2	조합놀이대	-	-	-	1	1	-	-	-	-	-	-	
	3-3	버섯분수	-	-	-	-	1	-	-	-	-	-	-	
	3-4	터널분수	-	-	-	-	2	-	-	-	-	-	-	
운동 시설		소계	-	26.6	증 26.6	4	4	-	-	-	-	-	-	
	4-1	체력단련장	-	26.6	증 26.6	-	1	-	-	-	-	-	-	
	4-2	체력단련시설	-	-	-	3	3	-	-	-	-	-	-	
	4-3	농구대	-	-	-	1	-	-	-	-	-	-	-	
편익 시설		소계	-	15.9	증 15.9	-	1	-	15.9	증 15.9	-	15.9	증 15.9	
	5-1	화장실	-	15.9	증 15.9	-	1	-	15.9	증 15.9	-	15.9	증 15.9	
관리 시설		소계	-	-	-	3	3	-	-	-	-	-	-	
	6-1	CCTV	-	-	-	1	1	-	-	-	-	-	-	
	6-2	공원안내판	-	-	-	-	1	-	-	-	-	-	-	
	6-3	시설안내판	-	-	-	1	1	-	-	-	-	-	-	
	6-4	웬스	-	-	-	1	-	-	-	-	-	-	-	72m
녹지			868.6	741.0	감 127.6	-	-	-	-	-	-	-	-	

6. 도로결정(변경) 조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로	기정	3	1	2.6	11.0	29.3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변경	3	1	2.3	7.6	17.5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기정	3	2	2.0	17.4	35.5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변경	3	2	2.3	5.6	12.6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기정	3	3	2.6	15.4	40.9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변경	3	3	2.0	20.0	40.0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기정	3	4	2.8	25.2	70.4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변경	3	4	3.5	4.3	15.1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1-1	
	기정	3	5	2.8	44.6	126.6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변경	3	5	6.4	5.8	38.2	연결로	휴게쉼터-2	중앙광장 1-1	
	기정	3	6	1.0	4.2	4.0	연결로	소로 3-5	중앙광장 1-1	
	폐지	-	-	-	-	-	-	-	-	
총계	기정	6	117.8	306.7	-	-	-	6	117.8	306.7
	변경	5	43.3	123.4	-	-	-	5	43.3	123.4

□ 관계도면 : 게재생략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공람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57호(2008. 10. 10.)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된 “대화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이 있어,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변경)

- 가. 구역명 : 대화동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나. 사업의 명칭 : 대화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 다.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155번지 일원
-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변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마. 면적 : 기정) 96,252㎡ → 변경) 84,404㎡ 감) 11,848㎡
- 바. 사업시행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공급

2. 정비계획 내용(변경)

가. 정비계획 및 면적(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96,252	11,494	감) 11,848	100.0	
택 지	소 계	81,590	70,096	감) 11,494	83.0	
	공동주택용지	81,590	69,119	감) 12,471	81.9	
	종교시설용지	-	977	증) 977	1.1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14,662	14,308	감) 354	17.0	
	공원	5,281	5,510	증) 229	6.6	
	도로	9,381	8,798	감) 583	10.4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에 관한 사항 : 공람도서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바.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에 관한 사항 : 공람도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① 토지이용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정비구역 경계 변경

- A= 96,252m² → 84,404m² / 감) 11,848m²

② 종교시설 신설 및 공원부지 확충

- 적정규모의 종교시설 및 공원시설부지 면적확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세대당 3m²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③ 공동주택 건폐율(20% → 24% / 증 4%), 용적률(226% → 239% / 증 13%)
및 최고높이(25층 → 29층 / 증 4층)변경

3.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2019. 10. 16. ~ 2019. 11. 15.)

4. 공람내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등에 관한 사항

5.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장소

가.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042-608-5372, FAX 042-608-3841)

나.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 042-608-5602, FAX 042-608-3882)

※ 공휴일에는 대덕구청 당직실에서 공람 가능함.

6. 주민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9. 10. 24.(목) 19:00 ~ 20:00

나. 장 소 : 대화동 주민복지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62)

나. 내 용 :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설명

7. 기타사항

본 정비계획(변경)은 관계법령에 의한 정비계획 결정(변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의견제출서

공람연번		제출자 성명		연락처	집	
제출자 주소					사무실	
					H.P (핸드폰)	
<p>상기 인적사항은 현 주민공람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p>						
제출의견						
세부의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2. 개정이유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위탁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나.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다.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9. 10. 16. ~ 2019. 11. 15.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11.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문화체육과(전화 : 042-608-6735, FAX : 042-608-3823, E-mail : jrjojo@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체육과 담당자 전홍수 (전화 : 042-608-67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직영할 경우, 공정·생태관광 전문가를 명예직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3. 공정·생태관광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4.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사업 자원관리
6. 그 밖에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2. 3.>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의견 :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임상병리 검사·접종 수수료에 관한 조항 보완 및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에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종전의 “건강증진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안 제6조제8호)
- 나. 제증명 발급, 유료접종, 검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 (안 별표)

4. 의견 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대덕구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319/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석봉동)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전화 : 042-608-5495 /FAX 042-608-385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진료관리담당 담당자 김선경 (전화: 042-608-54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건강증진센터”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수료액 표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고
1. 제증명 발급	가. 진단서	1통	500	요양신청용, 병사용,상해 진단용
	나.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중 사자의 건강진단 규 칙」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	
	다.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	
	라. 결핵(검진·치료경과)확인서	1통	500	
2. 유료접종	가. B형간염	1회	유료접종수수료는 백신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나. 장티푸스			
	다. 신증후군출혈열			
	라. 기타접종	1회	백신구입원가 및 소모품 비용	
3. 검사	A형간염	1회	해당연도 검사 원가 (검사시약비+재료비)	
4. 건강생활지원 센터 이용	가. 체력측정	1명(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 역 기준액 중 보건기관 진료수가에 따름.	
	나. 체력단련	1명(회)	10,000원 / 월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일부개정]

-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18. 12. 20., 타법개정]

-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38호, 2019. 1. 15., 일부개정]

-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개정 2017.4.7. 조례 제1217호>

수수료액표(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종목	단위	금액	비고
1. 진단서 (수첩) 및 제증명 발급	가.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원	
	나. 일반진단서	1통	500원	
	다. 특별진단서	1통	2,000원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라.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마. 건강진단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의 건강진단 규칙」 제 5조에서 정한 수수료	
	바. 사망진단서	1통	500원	
	사. 출생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아.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자. 1통 초과 발급	1통	100원	
	차. 결핵(검진·치료경과)확인서	1통	500원	
2. 유료 접종	가. 일본뇌염	1인분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인플루엔자는 해당 연도 결정가로 한다. (이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한다.)	
	나. B형간염	1인분		
	다. 장티푸스	1인분		
	라. 신증후군출혈열	1인분		
	마. 인플루엔자	1인분		
	바. 기타접종	1인분		
3. 검사	가. 골다공증(골밀도)검사	1명(회)	3,200원	
4. 건강증 진센터 이용	가. 체력측정	1명(회)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 역 기준액 중 보건기관 진료수가에 따름.	
	나. 체력단련	1명(회)	10,000원 / 월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취소사유를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의 취소 절차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는 상위법을 인용토록 하고, 각각의 취소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제26조, 제33조).

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등을 신설함(안 제34조의2).

다. 수의계약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규정 신설함(안 제34조의3).

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 절차를 신설함 (안 제39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소관부서 협의

3) 성별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협의

5) 입법예고: 2019. 10. 16. ~ 2019. 11. 05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11. 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에너지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전화 : 042-608-6925, FAX : 042-608-3831, E-mail : kaizr25@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경제과 담당자 박병목

(전화 : 042-608-69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를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로 한다.

- ①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통시장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26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3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절차) ①구청장이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이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절차) ①구청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34조의3(수익계약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재산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

1.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 편의를 위한 시설일 것
2. 행정재산이 시장 및 상점가 등의 내부 또는 인접하여 위치할 것
3. 시장 및 상점가 등과의 연계관리나 시설 전문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것

제39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

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회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u>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u></p> <p><u><신 설></u></p>	<p>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u>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통시장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② <u>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u> ----- ----.</p> <p>제26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절차) ①<u>구청장이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② <u>구청장이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u></p>

<신 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및 절차) ①구청장이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희수 및 조건)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갱신희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신 설>

제34조의3(수익계약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신 설>

하는 행정재산이 일반입찰에 부
치기 곤란할 경우에는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수의
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할
수 있다.

1.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
객 편의를 위한 시설일 것
2. 행정재산이 시장 및 상점가
등의 내부 또는 인접하여 위치
할 것
3. 시장 및 상점가 등과의 연계
관리나 시설 전문관리의 필요
성이 있을 것

제39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고
자 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
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⑤ 상인회는 상인회의 운영 및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⑪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⑫ 법인인 상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상인 및 건축물·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7. 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대덕구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19.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정함(안 제3조).

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정함.(안 제13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 19조부터 안 제26조까지).

바. 비용 보조 등에 대해 정함(안 제 27조부터 안 제28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11.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여성가족과(전화 : 042-608-6975, FAX : 042-608-3836, E-mail : liafly@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황정선(전화 : 042-608-69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육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서의 내용에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 따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기관으로부터 재위탁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 대표를 포함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 계약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법」 제28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 기간 중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위탁계약의 조정·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당시 법령에 따른다.

제18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경고, 직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운영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

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도서실, 장난감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집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다문화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학대 예방교육
9.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하 "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과 운영요원 및 보육교직원과 부모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영양사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자격 및 직무는 영 제14조에 따른다.

③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22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법 제51조의 2제1항,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려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평가 방법은 제16조제2항을 준용하며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결정한다.

④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 취소)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및 영 제26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위탁기관 소속위원, 보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용료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

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제2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21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자녀 셋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다자녀 가족

바.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지도·점검하거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센터장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비용

제27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비용
8. 보육아동 급식비
9. 냉난방비 등 운영비
10.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11. 보육료 차액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의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